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077
----------	------

제출일자 : 2005. 2. .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함.

(안 제2조 내지 제6조)

나. 위원회 회의 안전의 사전검토 및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7조)

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재난 유형별 통제관·담당관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주무 부서

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내지 17조)

마.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함.(안 제18조)

바.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위촉함.
(안 제22조)

사.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중로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함.
(안 제23조 내지 제29조)

아. 서울특별시중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
(안 부칙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2005년도 223만원 확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제정안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구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에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구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구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보건소장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
4. 구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대대장급
5.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당해 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계획 등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직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조(설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재난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
4. 사상자의 관리 및 피해상황의 조사
5. 이재민의 수용·구호 및 피해지역·시설의 응급복구
6. 재난사항의 신고접수·전파·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
7. 피해보상의 조정·중재 등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9.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10.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1. 법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제17조(구성 등) ①대책본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1.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통제관은 법 제3조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인 경우는 건설교통

국장이 되고, 법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재난인 경우는 행정관리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어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수습주무 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②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둔다. 이 경우 실무반의 근무자는 당해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 및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제3호·제4호의 재난의 종류별 통제관 및 수습주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 ①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하고, 당해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제19조(회의) ①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은 당해 재난 및 수습 관련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지원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①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연1회 이상 수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제출 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사전교육 이수자 등의 유·무선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 비상근무 소집 등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본부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본부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인력·물자 등 동원체계의 구축) ①본부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상시에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모니터) ①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자문단

제23조(설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4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 1인 및 부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임기) ①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구청장 또는 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협조요청)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간사) 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31조(수당 등)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